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0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정춘생·조 국·신장식

김재원 · 김선민 · 김준형

서왕진 · 차규근 · 황운하

박은정 · 강경숙 · 김종민

이해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253을"을 "353을"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253분의 50에"를 "353분의 70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3분의 60에"를 "353분의 90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3분의 100에"를 "353분의 130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3분의 43에"를 "353분의 63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은 매년 1천분의 10씩 각각 가감하여,

2034년까지 해당 비율을 1천분의 647 대 1천분의 353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비율은 인상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매년 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	②
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u>253을</u>	<u>353</u>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
	<u>♥</u>)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③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
세액의 <u>253분의 50에</u> 해당하	<u>353분의 70에</u>
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2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	353분의 90에

는	부분	은 법	률	제12	1183	호	기
방서	ll 법	일부	개정	법률	· 제	11	조
제1	항제	8호의	걔	정규	·정어		따
라	감소	되는	취	득세	, 지	방	亚
육사], 지	방교-	부세	l, 지	방교	육	재
정교	2부=	를 등을	을 년	^브 전ㅎ	ŀ기	위	하
여	대통	렁렁.	으로	정ㅎ	누는	바	에
따근	가 지	방자기	시단	체의	장기	라	특
별시	.] . <u>ī</u>	강역시	. J	특별	자치	시	•
도	및 특	투별자	치도	트의	교육	·감	에
게	안분	하여	납입] 한디	₹.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100에</u>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43에</u> 해당하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④ (생 략)

-	
-	
-	
-	
_	
_	
-	
-	
-	
-	
3. - -	<u>353분의 130에</u> -
-	
4.	 가. ~ 다. (현행과 같음)
-	<u>353분의 63에</u>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